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4-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등 결정),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헌법재판소 2022. 10. 5. 선고 2022헌마1334 결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초재1887 결정 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무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